|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1989년 2월 21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통과; 2002년 4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1차 개정; 2013년 6월 29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 등 12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2차 개정; 2018년 4월 27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등 6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3차 개정; 2018년 12월 2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등 5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4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수출입상품 검사 업무를 강화하고 수출입상품 검사 행위를 규율하며 사회공공공이익과 수출입 무역 관계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대외 경제•무역 관계의 원활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은 수출입상품검사부서(이하 '국가상검부서'로 약칭)를 설립하여 전국의 수출입상품 검사 업무를 주관한다. 국가상검부서가 각 지역에 설립한 수출입상품검사기구(이하 '상검기구'로 약칭)는 해당 관할구역의 수출입상품 검사 업무를 관리한다.  제3조 상검기구와 국가상검부서의 허가를 득한 검사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수출입상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제4조 수출입상품 검사는 인류의 건강과 안전 보호,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 환경보호, 사기행위 방지, 국가안전 수호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국가상검부서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수출입상품 목록(이하 '목록'으로 약칭)을 제정•조정하여 공포하고 실시한다.  제5조 목록에 수록된 수출입상품은 상검기구가 검사를 실시한다.  전항에 규정한 수입상품은 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판매•사용을 불허한다. 전항에 규정한 수출상품은 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수출을 불허한다.  이 조 제1항에 규정한 수출입상품으로 국가에서 규정한 검사 면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수화인 또는 송화인의 신청에 의해 국가상검부서의 심사비준을 거친 후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6조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수출입상품 검사라 함은, 목록에 수록된 수출입상품이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부합되는지를 결정하는 합격평정 활동을 지칭한다.  합격평정 절차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견본 추출, 검험 및 검사; 평가, 검증 및 합격보증; 등록, 인가 및 비준 그리고 각 항의 조합.  제7조 목록에 수록된 수출입상품은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다.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적시에 제정하여야 하며 제정되기 전까지 국가상검부서가 지정한 해외 관련 기준을 참조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8조 국가상검부서의 허가를 취득한 검사기구는 대외무역 관계자 또는 외국 검사기구의 의뢰를 수락하여 수출입상품 검사•감정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9조 법률•행정법규에 기타 검사기구가 검사를 실시도록 규정되어 있는 수출입상품 또는 검사 항목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국가상검부서와 상검기구는 수출입상품 검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관계측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상검부서와 상검기구의 업무수행인원은 수출입상품 검사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2장 수입상품 검사  제11조 이 법에서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한 수입상품의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은 수입신고지의 상검기구에 수입상품 검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이 법에서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한 수입상품의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은 상검기구가 규정한 장소와 기한 내에 수입상품에 대한 상검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검기구는 국가상검부서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이 법에서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한 상품을 제외한 기타 수입상품의 수화인이 그가 발견한 수입상품의 품질불량•하자•미달물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상검기구의 검사증명서 발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검기구에 검사증명서 발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중요한 수입상품과 대형 설비세트의 수화인은 대외무역계약의 약정에 의거하여 수출국에서 선적하기 전에 예비검사, 제조감독 또는 선적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상검기구는 수요에 따라 검사인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3장 수출상품 검사  제15조 이 법에서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한 수출상품의 송화인 또는 그 대리인은 상검기구가 규정한 장소와 기한 내에 상검기구에 수출상품 검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검기구는 국가상검부서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상검기구의 검사에 합격하여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수출상품은 상검기구가 규정한 기한 내에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여야 한다. 기한이 초과된 경우 다시 수출상품 검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출위험화물용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기업은 반드시 상검기구에 포장용기 성능감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위험화물을 생산하는 기업은 반드시 상검기구에 포장용기 사용감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포장용기를 사용한 위험화물은 수출을 불허한다.  제18조 부패•변질하기 쉬운 수출식품을 적재•운송하는 선창과 컨테이너에 대하여 운송인과 컨테이너 적재 업체는 반드시 적재하기 전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검사를 거쳐 합격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적재•운송을 불허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19조 상검기구는 이 법에서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한 수출입상품 이외의 기타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국가의 규정에 따라 추출검사를 실시한다.  국가상검부서는 추출검사 결과를 공포하거나 유관부서에 추출검사 상황을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 상검기구는 대외무역 원활화의 수요에 근거하여 국가의 규정에 따라 목록에 수록된 수출상품에 대하여 공장 출하 전의 품질감독 관리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의 수출입상품 검사 신고 수속을 대행하는 대리인은 수출입상품 검사 신고 수속 이행 시 상검기구에 대행위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국가상검부서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를 통하여 조건을 만족시키는 국내외 검사기구가 위탁에 의한 수출입상품 검사•감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 국가상검부서와 상검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국가상검부서의 허가를 득한 검사기구의 수출입상품 검사•감정 업무와 활동을 감독하며 그가 검사를 실시한 상품에 대하여 추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국무원 인증인가감독관리부서는 국가의 통일된 인증제도에 근거하여 유관 수출입상품에 대한 인증관리를 실시한다.  제25조 인증기구는 국무원 인증인가감독관리부서가 외국 유관기구와 체결한 협정에 근거하거나 외국 유관기구의 위탁에 의하여 수출입상품 품질인증 업무를 진행하고 인증을 통과한 수출입상품에 품질인증표시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제26조 상검기구는 이 법에 따라 허가제도를 실시하는 수출입상품에 대한 검증 관리를 시행하며 증서를 검사하고 증서와 화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제27조 상검기구는 수요에 따라 검사를 통과한 수출입상품에 상검표시 또는 봉인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제28조 상검기구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수출입상품 검사 신고인은 원(原) 상검기구 또는 그의 상급 검사기구 내지 국가상검부서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 신청을 접수한 상검기구 또는 국가상검부서는 적시에 재검사 결론을 내린다.  제29조 상검구기구•국가상검부서의 재검사 결론에 불복하거나 상검기구가 내린 처벌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30조 국가상검부서와 상검기구는 직책을 이행함에 있어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여야 하며 법에 정해진 직권과 절차에 따라 엄격히 법을 집행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국가상검부서와 상검기구는 법에 따른 직책 이행의 수요에 근거하여 수출입상품 검사인력이 양호한 정치적 소양과 업무 소양을 갖추도록 조직개발을 강화하여야 한다. 수출입상품 검사인력은 정기적으로 업무 교육훈련과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를 통과해야만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수출입상품 검사인력은 반드시 직책에 충실하고 문명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업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리를 도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국가상검부서와 상검기구는 내부 감독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하여야 하며 그의 업무수행인원의 법 집행 활동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상검기구는 수출입상품 검사 신고 접수, 검사 실시, 검사증명서 발행 등 내부 주요 직위의 직책과 권한이 명확하여야 하며 서로 분리되고 상호간에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  제32조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도 국가상검부서•상검기구 및 그 업무수행인원의 위법•범칙행위를 고발•신고할 권리가 있다. 고발•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직책과 업무분장에 따라 적시에 조사하고 처리하여야 하며 고발인•신고인의 신분을 비밀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3조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거쳐야 하는 수입상품을 검사 신고 절차 없이 무단 판매•사용하거나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거쳐야 하는 수출상품을 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수출하는 경우 상검기구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화물가액의 5% 이상 2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4조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국가상검부서의 허가 없이 수출입상품 검사•감정 업무에 무단 종사하는 경우 상검기구가 불법경영 중단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제35조 이물질•가짜를 섞은 상품, 가짜를 진품으로 가장한 상품, 불량품을 우량품으로 가장한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불합격 수출입상품을 합격 수출입상품으로 가장하는 경우 상검기구가 수입 또는 수출 중단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화물가액의 50%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6조 수출입상품 검사증명서•인장•표시•봉인표시•품질인증표시를 위조•변조•매매 또는 절취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아니한 경우 상검기구•인증인가감독관리부서가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시정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화물가액과 동일한 액수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제37조 국가상검부서•상검기구의 업무수행인원이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그가 인지한 상업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8조 국가상검부서•상검기구의 업무수행인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고의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만들거나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검사결과를 위조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검사증명서의 발행을 지연시키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39조 상검기구와 기타 검사기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감정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을 수취한다.  제40조 국무원은 이 법에 근거하여 실시조례를 제정한다.  제41조 이 법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1989年2月21日第七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六次会议通过；根据2002年4月28日第九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七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的决定》第一次修正；根据2013年6月29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三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等十二部法律的决定》第二次修正；根据2018年4月27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国境卫生检疫法〉等六部法律的决定》第三次修正；根据2018年12月29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七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等五部法律的决定》第四次修正）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加强进出口商品检验工作，规范进出口商品检验行为，维护社会公共利益和进出口贸易有关各方的合法权益，促进对外经济贸易关系的顺利发展，制定本法。  第二条　国务院设立进出口商品检验部门（以下简称国家商检部门），主管全国进出口商品检验工作。国家商检部门设在各地的进出口商品检验机构（以下简称商检机构）管理所辖地区的进出口商品检验工作。  第三条　商检机构和经国家商检部门许可的检验机构，依法对进出口商品实施检验。  第四条　进出口商品检验应当根据保护人类健康和安全、保护动物或者植物的生命和健康、保护环境、防止欺诈行为、维护国家安全的原则，由国家商检部门制定、调整必须实施检验的进出口商品目录（以下简称目录）并公布实施。  第五条　列入目录的进出口商品，由商检机构实施检验。  前款规定的进口商品未经检验的，不准销售、使用；前款规定的出口商品未经检验合格的，不准出口。  本条第一款规定的进出口商品，其中符合国家规定的免予检验条件的，由收货人或者发货人申请，经国家商检部门审查批准，可以免予检验。  第六条　必须实施的进出口商品检验，是指确定列入目录的进出口商品是否符合国家技术规范的强制性要求的合格评定活动。  合格评定程序包括：抽样、检验和检查；评估、验证和合格保证；注册、认可和批准以及各项的组合。  第七条　列入目录的进出口商品，按照国家技术规范的强制性要求进行检验；尚未制定国家技术规范的强制性要求的，应当依法及时制定，未制定之前，可以参照国家商检部门指定的国外有关标准进行检验。  第八条　经国家商检部门许可的检验机构，可以接受对外贸易关系人或者外国检验机构的委托，办理进出口商品检验鉴定业务。  第九条　法律、行政法规规定由其他检验机构实施检验的进出口商品或者检验项目，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办理。  第十条　国家商检部门和商检机构应当及时收集和向有关方面提供进出口商品检验方面的信息。  国家商检部门和商检机构的工作人员在履行进出口商品检验的职责中，对所知悉的商业秘密负有保密义务。  第二章　进口商品的检验  第十一条　本法规定必须经商检机构检验的进口商品的收货人或者其代理人，应当向报关地的商检机构报检。  第十二条　本法规定必须经商检机构检验的进口商品的收货人或者其代理人，应当在商检机构规定的地点和期限内，接受商检机构对进口商品的检验。商检机构应当在国家商检部门统一规定的期限内检验完毕，并出具检验证单。  第十三条　本法规定必须经商检机构检验的进口商品以外的进口商品的收货人，发现进口商品质量不合格或者残损短缺，需要由商检机构出证索赔的，应当向商检机构申请检验出证。  第十四条　对重要的进口商品和大型的成套设备，收货人应当依据对外贸易合同约定在出口国装运前进行预检验、监造或者监装，主管部门应当加强监督；商检机构根据需要可以派出检验人员参加。  第三章　出口商品的检验  第十五条　本法规定必须经商检机构检验的出口商品的发货人或者其代理人，应当在商检机构规定的地点和期限内，向商检机构报检。商检机构应当在国家商检部门统一规定的期限内检验完毕，并出具检验证单。  第十六条　经商检机构检验合格发给检验证单的出口商品，应当在商检机构规定的期限内报关出口；超过期限的，应当重新报检。  第十七条　为出口危险货物生产包装容器的企业，必须申请商检机构进行包装容器的性能鉴定。生产出口危险货物的企业，必须申请商检机构进行包装容器的使用鉴定。使用未经鉴定合格的包装容器的危险货物，不准出口。  第十八条　对装运出口易腐烂变质食品的船舱和集装箱，承运人或者装箱单位必须在装货前申请检验。未经检验合格的，不准装运。  第四章　监督管理  第十九条　商检机构对本法规定必须经商检机构检验的进出口商品以外的进出口商品，根据国家规定实施抽查检验。  国家商检部门可以公布抽查检验结果或者向有关部门通报抽查检验情况。  第二十条　商检机构根据便利对外贸易的需要，可以按照国家规定对列入目录的出口商品进行出厂前的质量监督管理和检验。  第二十一条　为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办理报检手续的代理人办理报检手续时应当向商检机构提交授权委托书。  第二十二条　国家商检部门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通过考核，许可符合条件的国内外检验机构承担委托的进出口商品检验鉴定业务。  第二十三条　国家商检部门和商检机构依法对经国家商检部门许可的检验机构的进出口商品检验鉴定业务活动进行监督，可以对其检验的商品抽查检验。  第二十四条　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根据国家统一的认证制度，对有关的进出口商品实施认证管理。  第二十五条　认证机构可以根据国务院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同外国有关机构签订的协议或者接受外国有关机构的委托进行进出口商品质量认证工作，准许在认证合格的进出口商品上使用质量认证标志。  第二十六条　商检机构依照本法对实施许可制度的进出口商品实行验证管理，查验单证，核对证货是否相符。  第二十七条　商检机构根据需要，对检验合格的进出口商品，可以加施商检标志或者封识。  第二十八条　进出口商品的报检人对商检机构作出的检验结果有异议的，可以向原商检机构或者其上级商检机构以至国家商检部门申请复验，由受理复验的商检机构或者国家商检部门及时作出复验结论。  第二十九条　当事人对商检机构、国家商检部门作出的复验结论不服或者对商检机构作出的处罚决定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也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  第三十条　国家商检部门和商检机构履行职责，必须遵守法律，维护国家利益，依照法定职权和法定程序严格执法，接受监督。  国家商检部门和商检机构应当根据依法履行职责的需要，加强队伍建设，使商检工作人员具有良好的政治、业务素质。商检工作人员应当定期接受业务培训和考核，经考核合格，方可上岗执行职务。  商检工作人员必须忠于职守，文明服务，遵守职业道德，不得滥用职权，谋取私利。  第三十一条　国家商检部门和商检机构应当建立健全内部监督制度，对其工作人员的执法活动进行监督检查。  商检机构内部负责受理报检、检验、出证放行等主要岗位的职责权限应当明确，并相互分离、相互制约。  第三十二条　任何单位和个人均有权对国家商检部门、商检机构及其工作人员的违法、违纪行为进行控告、检举。收到控告、检举的机关应当依法按照职责分工及时查处，并为控告人、检举人保密。  第五章　法律责任  第三十三条　违反本法规定，将必须经商检机构检验的进口商品未报经检验而擅自销售或者使用的，或者将必须经商检机构检验的出口商品未报经检验合格而擅自出口的，由商检机构没收违法所得，并处货值金额百分之五以上百分之二十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三十四条　违反本法规定，未经国家商检部门许可，擅自从事进出口商品检验鉴定业务的，由商检机构责令停止非法经营，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一倍以上三倍以下的罚款。  第三十五条　进口或者出口属于掺杂掺假、以假充真、以次充好的商品或者以不合格进出口商品冒充合格进出口商品的，由商检机构责令停止进口或者出口，没收违法所得，并处货值金额百分之五十以上三倍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三十六条　伪造、变造、买卖或者盗窃商检单证、印章、标志、封识、质量认证标志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由商检机构、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依据各自职责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货值金额等值以下的罚款。  第三十七条　国家商检部门、商检机构的工作人员违反本法规定，泄露所知悉的商业秘密的，依法给予行政处分，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三十八条　国家商检部门、商检机构的工作人员滥用职权，故意刁难的，徇私舞弊，伪造检验结果的，或者玩忽职守，延误检验出证的，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六章　附　则  第三十九条　商检机构和其他检验机构依照本法的规定实施检验和办理检验鉴定业务，依照国家有关规定收取费用。  第四十条　国务院根据本法制定实施条例。  第四十一条　本法自1989年8月1日起施行。 |